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03,164,055	63,094,922
일반회계	1,766,274,849	52,988,245
특별회계	336,889,206	10,106,676
공기업특별회계	249,263,112	7,477,8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963,555	2,968,9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299,557	4,508,987
기타특별회계	87,626,094	2,628,783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966,688	239,001
수질개선특별회계	10,818,553	324,55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7,902,649	537,079
기반시설특별회계	72,249	2,167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2,694	1,58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9,864	1,1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2,707	8,481
주택사업특별회계	239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8,638,281	1,459,148
지하수특별회계	1,398,918	41,968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453,252	13,5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000,000천원으로 한다.